코람코사모부동산투자신탁제18호 신탁계약서 신구조문 비교표

2016.01.29

조항	구	신	비고
	[제정 2014.11.], 시행일 2014.11.	[제정 2014.11.], 시행일 2014.11. **[일부 개정 2016.01.29], 시행일 2016.01.29**	형식 보완
제29조	**제29조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)** 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제1기의 경우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이며, 이후 매 12개월간으로 한다. 다만, 신탁계약 해지 시에는 투자신탁회계기간 초일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(회계기간 종료일: 매 10월 31일)	**제29조(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)** ①이 투자신탁의 회계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. 제1기: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로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제2기: 2015년 11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제3기: 2016년 2월 1일부터 2016년 1월 31일까지 제4기: 2017년 2월 1일부터 신탁계약 종료일까지 ②제1항의 회계기간에도 불구하고 투자신탁이 해지되는 경우 투자신탁 해지일이 속하는 기의 회계기간은 직전 회계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부터 신탁계약의 해지일까지로 한다. **<개정 2016.01.29>**	회계기간 변경
제37조	**제37조(보수)** ①항 내지 ④항 생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본 항 제1호 및 제3호는 매일의 투자신탁 총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, 본 항 제2호 및 제4호는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2	**제37조(보수)** ①항 내지 ④항 좌동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(본 항 제1호 및 제3호는 매일의 투자신탁 총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고, 본 항 제2호 및 제4호는 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)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. 1. 집합투자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2 **(VAT별도)** 2.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2	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보수에 VAT 별도 명시

	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2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2	3.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2 **(VAT별도)** 4.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0.2 **<개정 2016.01.29>**	
부칙		**부칙<2016.01.29>** **제1조(시행일) 이 신탁계약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**	
날인 부분	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, 15F (삼성동, 골든타워)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 대표이사 박 래 익 (인) 신탁업자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2가 9-1 주식회사 국민은행 대표이사 이건호 위 지배인 수탁사업부장 박지수 (인)	집합투자업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, 15F (삼성동, 골든타워)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운용 대표이사 **이 현 승 (인)** 신탁업자 (좌동)	대표이사 성명 정정